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845
----------	------

발의연월일 : 2024. 8. 14..

발의자 : 김현정 · 전재수 · 박균택
박정현 · 조인철 · 이건태
김종민 · 민병덕 · 복기왕
허성무 · 양문석 · 김문수
김기표 · 권향엽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위원회가 허가를 받은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에 한하여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경영 건전성을 크게 해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등 경영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업체들은 경영개선 조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그런데 등록 대상인 지불결제회사를 겸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거래 규모가 지난해 230조원으로 크게 늘어나 금융당국의 경영에 대한 감독권과 명령권을 허가 대상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영개선을 위한 감독과 규제를 허가를 받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아니라 등록된 전자금융업자로까지 확대하여 모든 금

용회사나 전자금융업자의 경영개선에 대한 책임 및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42조제3항 및 제4항).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3항 중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제2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제2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제1항·제4항·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4조의7,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